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동래구 낙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76 - 1 외 38필지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2.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해당없음
중계장치 설치장소	1. 지하1층 : 102동 제연헬름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해당없음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 ※ 공사요청일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제 35조~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0년 11월 04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민관식
대리인	(주)아이에스종합건축사 사무소	이기워 (인동의함)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